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699
----------	-------

발의연월일 : 2025. 9. 4.

발 의 자 : 전용기·민병덕·박선원
김용민·한준호·한병도
박찬대·문진석·채현일
김준혁·이기현·김남근
박용갑·오세희·전진숙
김영배·복기왕·서미화
박상혁·조인철·문금주
백승아·박홍근·모경중
의원(24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죄에 대하여 국회가 고발한 경우, 검사는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고 검찰총장은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국회 조사 과정에서 다수의 증인이 불출석하거나 위증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국회의 고발이 이어졌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첫째, 수사 주체를 검사로만 한정하여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변화된 수사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둘째,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한을 준수하지 않아 진상규명이 지연되고, 이에 대한

국회의 실효성 있는 통제 장치가 미비하여 국회의 고발권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수사기관의 범위를 사법경찰관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까지 확대하고, 수사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의 통제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국회 고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진상규명을 통해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15조의2).

주요내용

가. 증인·감정인 등의 범죄에 대한 고발기관을 검사 외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소속 검사 및 사법경찰관까지 확대함(현행 제15조제4항 삭제, 안 제15조의2제1항 신설).

나. 수사기관의 장이 2개월 내에 수사를 종결하기 어려운 경우, 국회에 중간보고를 하고 2개월의 범위에서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함(안 제15조의2제2항 신설).

다. 수사기관이 정해진 기간 또는 연장된 기간 내에 수사를 종결하지 않을 경우, 국회가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명을 요구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처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여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함(안 제15조의2제3항 신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수사기간 등) ① 제15조제1항에 따른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속된 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법경찰관은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결과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수사를

종결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중간보고를 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은 2개

월의 범위에서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항에 따른 중

간보고 없이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여 수사 중이거나 제2항에

따라 연장된 수사기간을 초과하여 수사 중인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거나 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사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수사를 종결하지 못하고 수사 중인 경우 검찰총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고 그 처분결과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제1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중간보고를 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은 1개월의 범위에서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검사가 제2항에 따른 중간보고 없이 같은 항에 따른 기간(1개월 이내를 말한다)을 초과하여 수사 중이거나 같은 항에 따라 연장된 수사기간을 초과하여 수사 중인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거나 그 검사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고발) ① ~ ③ (생 략) <u>④ 제1항에 따른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u> <u><신 설></u>	제15조(고발) ① ~ ③ (현행과 같 음) <u><삭 제></u> <u>제15조의2(수사기간 등) ① 제15조제1항에 따른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속된 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법경찰관은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결과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 <u>② 수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수사를 종결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중간 보고를 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u>

또는 위원장은 2개월의 범위에서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항에 따른 중간보고 없이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여 수사 중이거나 제2항에 따라 연장된 수사기간을 초과하여 수사 중인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거나 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